

## 행정처분·경영지도·경영관리·적기시정조치

1. 조치 대상 법인명	주식회사 ES저축은행 (舊라이브저축은행)
2. 행정처분 등의 종류	영업의 일부정지,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
3. 행정처분 등의 근거	<p>「상호저축은행법」제12조, 제18조의2, 제23조, 제24조 및 &lt;별표1&gt; 제38조의 2, 제40조</p> <p>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37조, 제38조, 제40조, 제41조</p> <p>「상호저축은행시행령」제9조, 제30조의2, 제32조</p> <p>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</p> <p>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제20조, &lt;별표3&gt;</p>
4. 행정처분 등의 원인	<p>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</p> <p>②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자료은폐목적으로 PC하드디스크 교체</p> <p>③ 개인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 소홀</p> <p>④ 前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부당제공 및 타인의 명의 이용 신용공여</p>
5. 행정처분 등의 내용	<p>① 기관 :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에 한하여 영업정지(6월), 과징금(91억10백만원), 과태료(74백만원)</p> <p>* 부동산담보대출, 소액신용대출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.적금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</p> <p>② 임원 : 퇴직자 위법.부당사항(해임권고상당)1명</p>
6. 기타	<p>&lt; 예금주등 고객 유의사항 &gt;</p> <p>① 금번조치는 前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現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등에 따른 조치는 아님</p> <p>② 舊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現경영진은 유가증권담보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'20.9월 기준 BIS비율은 15.7%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임</p>